

 <b>교육부</b>				<h1>해명자료</h1> <p>2019. 12. 18.(수) 배포</p>		
보도일	<b>배포 즉시</b>					
담당과	교과서정책과	담당자	과 장	김영재 (☎ 044-203-6477)	교육연구사	양서윤 (☎ 044-203-7026)

## 자유발행제 적용 도서도 교육과정 및 교과서 편찬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

- 언론사명 / 보도일시 : 조선일보(박세미 기자)/ 2019.12.18.(수)
- 제목 : 정부, “좌파교육감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교과서 늘린다”

### <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>

- 해당 기사 중 자유발행제를 적용하는 도서가 ‘교육과정’ 및 ‘집필 기준\*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.
  - \* 「집필기준」은 이념적 균형성과 내용의 정확성이 강조되는 국어, 도덕, 역사, 경제 과목의 내용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과용도서 집필의 길잡이
- 자유발행제 적용 도서를 포함한 모든 교과용도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편찬 관련 기준\*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  - \* 헌법 정신과의 일치, 교육의 중립성 유지, 법령준수, 지식 재산권의 존중, 영토관련 사항, 인권 보호 관련 사항 등
- 「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」는 현재 학교에 보급된 인정도서 중 급변하는 시대에 탄력적 대처가 필요한 일부 과목\*에 대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가 개발·보급될 수 있도록 인정심사 기준

일부를 완화하는 것입니다.

\* **전문교과Ⅰ**(특수목적고 전공 관련 과목), **전문교과Ⅱ**(특성화고 전공 관련 과목, 단, 수능 출제과목 및 NCS 제외) **284책** 및 **고등학교 학교장 개설과목**

- 앞으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교과서가 적기에 개발·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